



CITY OF CERRITOSSM

CIVIC CENTER • 18125 BLOOMFIELD AVENUE
P.O. BOX 3130 • CERRITOS, CALIFORNIA 90703-3130
PHONE: (562) 860-0311 • CERRITOS.US



유권자가 시 발의안에 대한 찬반론을 시 서기관/선거 관리인에게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에 대한 공지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세리토스에서 시행될 시 총선거에서 다음 발의안이 유권자에게 제시될 것임을 공지합니다.

행정상의 제목: 전체 현장 "전면 개편", 업데이트, 현대화	
세리토스시 현장의 일부 조항을 대체 또는 우선하는 주법에 기초하여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일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여 포용성을 증가시키고, 고루한 사업 관행을 타파하여 시 전역 차원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문법, 구두법, 철자법 상의 오류를 교정하여야 합니다.	예
	아니오
행정상의 표제: 친족등용금지법 정책(새 현장 제609조에 제안)	
세리토스시 현장에 시장, 시의원, 또는 시 관리직에 4촌 이내의 혈연 또는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고용 또는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된 제609조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예
	아니오
행정상의 제목: 시의회 임기 제한(현재 임기제한 조항을 모두 삭제)	
세리토스시 현장 제400조, 시의원의 임기에 관한 현재의 제한조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예
	아니오
행정상의 제목: 시의회 임기 제한(현재의 임기제한 조항유지)	
경쟁 관계에 있는 임기제한에 관한 다른 법안이 유권자의 투표로 단순다수결에 의해 긍정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세리토스시 현장 제400조를 사실상 수정하지 말고 현재의 시의회의 임기제한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아니오
행정상의 제목: 시 의의회 임기 제한(일생에 최대 두 번까지만 증임)	
2022년 4월 12일 후, 4년제 임기를 두(2) 번 마친(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시의원은 두 번째 4년제 임기가 끝난 후 시의회에 선출 또는 임명될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세리토스시 현장 제400조를 수정하여 현재의 시의원의 임기제한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예
	아니오
행정상의 제목: 시 의의회 임기 제한(일생에 최대 세 번까지만 증임)	
2022년 4월 12일 후, 4년제 임기를 세(3) 번 마친(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시의원은 세 번째 4년제 임기가 끝난 후 시의회에 선출 또는 임명될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세리토스시 현장 제400조를 수정하여 현재의 시의원의 임기제한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예
	아니오

또한,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제 4조 3장 9절에 따라, 본 시의 입법 기관, 또는 시의 입법 기관이 승인한 구성원(들) 모두 및 개인 유권자, 진정한 시민들의 협회, 또는 모든 유권자와 협회 연합체는 **300자 미만**으로 된 시 발의안에 대한

GRACE HU
MAYOR

CHUONG VO
MAYOR PRO TEM

BRUCE W. BARROWS
COUNCILMEMBER

NARESH SOLANKI
COUNCILMEMBER

FRANK AURELIO YOKOYAMA
COUNCILMEMBER

K

찬반론을 제출할 수 있는 바, 여기에는 필자(들)의 인쇄체로 기재한 성명과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단체를 대표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단체명과 단체의 주요 임원 중 한 명임과 동시에 찬반론 필자인 사람 최소한 한 명의 이름을 인쇄체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을 이에 공지하는 바입니다.

참고: 찬반론의 필자는 찬반론 및 "찬반론의 필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진술서 양식"에 반드시 성명을 인쇄체로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찬반론의 필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진술서 양식은 본 공지사항에 부착되었으며 시청에 위치한 시 서기관/선거 관리원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city_clerk@cerritos.us로 이메일을 보내 요청하여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 선거용 찬반론과 선거를 위한 찬반론과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준비하고 인쇄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근거하여, 시 서기관/선거관리원은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공지된 정규 근무시간까지** 찬반론을 제출할 수 있는 마감 시간으로 정했으며, 이 시간 이후에는 선거법 제4조에 규정된 대로 시 발의안에 대한 찬반론을 인쇄하여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시 서기관/선거관리원에게 제출될 수 없음을 이에 공지하는 바입니다. 찬반론은 필자가 정자체로 기재한 성명 및 서명과 함께 시 서기관/선거관리원에게 접수되어야 하고, 특정 단체를 대표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단체명과 단체의 주요 임원 중 한 명이면서 찬반론 필자인 사람 최소한 한 명의 이름을 정자체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세리토스시 시 서기관/선거관리원 사무실, 18125 Bloomfield Avenue, 1st Floor, City Hall, Cerritos, California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 서기관/선거관리원이 정한 **2022년 1월 27일 화요일, 공지된 정규 업무 시간까지** 찬반론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거법 권한 하에 접수된 모든 시 조례, 공정한 분석 또는 직접 논거는 주민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찬반론과 분석(들)의 -접수 마감일 후 최소 10일 동안 시 서기관/선거관리원 사무실에 비치될 것임을 공지합니다.



Vida Barone, 시 서기관/선거관리원

날짜: 2022년 1월 14일